

##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정(안) 입법예고 주요 내용

### □ 주요내용

#### 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(안 제2조, 별표1)

-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

#### ※ 직업성 질병 주요 내용[별표1 관련]

1.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\*

\* 심한 두통과 출혈, 근육통, 피로감, 구토, 메스꺼움 및 39도 이상의 고열 등

2.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등

#### ②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(안 제4조, 제5조, 제10조~제13조)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△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·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· 이행에 관한 조치 △안전 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

#### ※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

- ①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- ②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·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 점검

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로 대체 가능

- ③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(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하는 경우 겸업 가능)

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력배치

구분	적용대상	선임방법	배치인원
안전관리자	▶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 ※전문기관에 위탁 가능	▶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 소지자 등	각 1명 이상
보건관리자	▶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업장 ※전문기관에 위탁 가능	▶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 소지자 등	
산업보건의	▶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※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적용 배제	▶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등	
안전·보건 관리담당자	▶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※안전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배치해야 하는 경우 적용 배제	▶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	1명 이상

-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
- ⑤ 사업장 안전·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여 개선조치
- ⑥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에 대한 대응절차 및 구호 조치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별 1회 이상 확인·점검
- ⑦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, 용역,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안전·보건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

③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(안 제6조~제9조, 별표 4)

-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·보건교육의 내용 등 구체화
  - (교육 내용) △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·이행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△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등
  - (교육 방법)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
  - (과태료 부과기준)

적용대상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	1차	2차	3차
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	500	1,000	1,500
그 외	1,000	3,000	5,000

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(안 제14조)

-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
  - (공표 대상) △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·소재지 △발생 일시와 장소, 재해자 현황 △발생 재해의 내용, 원인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
  - (공표 방법)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

□ 시행일 : '22.1.27일부터 시행